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. 10. 1 선고 2019가단5233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
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(망 D의 상속인)

3. E(망 D의 상속인)

4. F(망 D의 상속인)

5. G(망 D의 상속인)

6. H(망 D의 상속인)

7. I(망 D의 상속인)

8. J(망 D의 상속인)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0. 1.

주 문

1.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, 피고 E, F, G, H, I, J은 각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1991. 9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. 2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안동철

별지